

#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0년 11월 1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10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66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9차 건설교통위원회(2010. 12. 20)  
상정 및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하수과장 고영태)

### □ 제안이유

- 하수도법 개정 및 「하수도 표준조례안」(환경부 2010.9.30. 일부개정)시달에 따라 하수의 배제방식별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한편,
- 2007년 하수도요금 인상 이후 서민가계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매년 순손실액이 증가하는 등 재정 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어 요금을 인상하여 하수도요금의 점진적 현실화 및 재정의 안정을 확보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량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2 신설)

나. 하수도요금을 업종별로 평균 8퍼센트 인상하고, 현행 4개 업종별 동일부과방식에서 하수의 배제방식별(분류식지역, 합류식 지역, 하수관거사용지역) 3개 지역으로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조정함. (안 제10조제2항 별표 1)

다. 수질하수도사용료 징수대상 항목의 확대(2개→3개)에 따른 사용료 산정기준을 보완함. (안 제10조제2항 별표 3)

###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문	답 변
<p>○ 하수도 요금이 평균 8%인상하면 월 인상금액은 얼마인지?</p> <p>○ 공과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홍보에 있어 8%인상보다는 월 200원~400원 인상된다고 홍보하면 인상에 따른 체감도가 낮을것 같음.</p> <p>○ 타시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 일반용은 현 요금으로 동결하고 가정용만 인상하는 방안은 어떠한지?</p>	<p>○ 일반가정에서 분류식 지역은 월 400원, 합류식 지역은 월 200원 정도 인상됨.</p> <p>○ 홍보자료 작성 시 반영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음.</p> <p>○ 추후 인상 요인 발생 시 일반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p>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1년 3

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구분 업종	사 용 요 율				비 고
	사용구분 (m <sup>3</sup> /월)	m <sup>3</sup> 당 단가(원)			
		분류식지역	합류식지역	하수관거 사용지역	
가 정 용	20이하	190	180	41	
	20초과~30이하	313	297	68	
	30초과	469	446	101	
일 반 용	50이하	402	382	87	단, 초등학교· 중학교·고등 학교는 사용량 에 관계없이 m <sup>3</sup> 당 1단계(50 이하)단가 적용
	50초과~300이하	816	775	176	
	300초과~1,000이하	1,229	1,168	266	
	1,000초과	1,643	1,561	355	
대 중 탕 용	1,000이하	324	308	70	
	1,000초과~2,000이하	380	361	82	
	2,000초과	514	488	111	
산 업 용	m <sup>3</sup> 당	358	340	77	

주 1. 단일시설 안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m<sup>3</sup>당 단가 구분

- 가. 분류식 지역: 오수·우수관거가 분리된 지역으로 발생오수가 우수관거를 통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지역(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되는 지역)
- 나. 합류식 지역: 합류관거를 통하여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되는 지역
- 다. 하수관거 사용지역: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별표 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3항)

1. 대상항목 :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또는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총인 또는 총질소

2. 사용료 산정기준

가.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나.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다. 폐수배출량은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측정기기에 따라 산정한다.

3. 수질하수도사용료

가. 항목별 산출방식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

당 폐수배출량(m<sup>3</sup>/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나.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